

사건검 대상

문서번호	정금 5011 - 242	감 사
처리기한	1998. 8.	보존기간
기 안	1998. 8.	영구
발 신	1998. 8.	부총책보
과 장	부 장	부총재
		총 재

가 인 자 김 봉 기 함
 소 속 금융 기획 과 (법무실) 기획부 함
 직 위 원원 전화 4040 이
 주 신
 전 소
 재 직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

포괄금융 이용대상업체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하여 <붙임1>과 같
 이 검토하고 <붙임2>와 같이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
 세칙」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붙임 1. 포괄금융 이용대상업체 범위 확대(안) 1부.
- 2.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(안) 1부. 끝.

사본수신처 :
 한국은행 행내 021-10(89.11.19)

(전 재시작)

업무	필요	공
인력		
기록	불요	함

(붙임 1)

包括金融 利用對象業體 範圍 擴大(案)

1. 擴大必要性

- 포괄금융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생산자금과 원자재구매자금 등과 같이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액 수출업체의 무역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1985.1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
 - 현재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업체만 포괄금융을 이용할 수 있음
- 최근 수출실적 증대로 포괄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일부 소액수출업체의 경우 무역금융을 자금용도별로 구분하여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료준비(원자재의존률 산정 등)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(2~3명 정도)되는 등 업무부담 증가로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
- 따라서 최근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수출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

2. 擴大方案

-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의 범위를 현재의 연간 수출실적 1천만달러 미만에서 2천만달러 미만으로 확대
 - 90.7월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 범위를 연간수출실적 5백만달러 미만에서 1천만달러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음

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1 조 ~ 제 8 조 (생략)	제 1 조 ~ 제 8 조 (현행과 같음)	
제 9 조(융자금의 구분) ① (생략)	제 9 조(융자금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(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)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천만 「달러」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무역금융을 취급(이하 “포괄금융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(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)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천만 「달러」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무역금융을 취급(이하 “포괄금융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	○ 포괄금융 이용대상업체 확대
제 10 조(포괄금융 수혜업체) ① (생략)	제 10 조(포괄금융 수혜업체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업체를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1천만 「달러」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	②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업체를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2천만 「달러」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	○ 포괄금융 이용대상업체 확대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
제 11 조 ~ 제 37 조 (생략)	제 11 조 ~ 제 37 조 (현행과 같음)	
(신 설)	부 칙	
	이 세칙은 1998. 8. 20부터 시행한다.	○ 시행일자 명시